변경대비표(모자전환)

1. **대상 펀드: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**

2. **변경 사항:**

   1) **투자신탁 명칭 변경**

   2) **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**

   3) **운용역 변경**

3. **효력발생 예정일: 2022년 4월 29일 (금)**

4. **변경 내용:**

   1) **투자신탁 명칭 변경**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**투자신탁** 1 호(주식)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**자투자신탁** 1 호(주식)

   2) **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**

자투자신탁 / 모투자신탁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
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80% 이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1.~7. <생략> **8. <신설>**	1.~7. <좌동> **8. "모자형"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**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② <생략> 1.~5.<생략> **6. <신설>** ③ <생략> ④ <생략> **⑤ <신설>**	② <좌동> 1.~5. <좌동> **6. 모자형** ③ <좌동> ④ <좌동> **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** **1.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**
제14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**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.**	이 투자신탁은 **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**
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**1.~12. <생략>** ②<생략>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**1.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** **2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** ②<좌동>
제16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**제17조**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**1.~9. <생략>**	집합투자업자는 **제15조**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**1. 제3조제5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** **2. 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**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**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 **1.~10. <생략>**	**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** **1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** **2. 환매조건부매수** **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**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<생략>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**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**②~④ <생략>**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제16조제1호 및 제2호**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<좌동>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**제16조제1호 및 제2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**②~④ <삭제>**
제23조의2(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수)	**<신설>**	**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**
제24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**<신설>**	**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**

		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~③ <생략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**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**할 수 있다.	①~③ <좌동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**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**할 수 있다.
제28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① <좌동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**(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)**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
제35조(수익자총회)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생략> **⑩ <신설>** ⑪ <생략>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**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**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좌동> **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** ⑪ <좌동>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 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생략> ③~④ <생략>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① <좌동>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**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**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좌동> ③~④ <좌동>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**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**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**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**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	⑦~⑫ <생략>	⑦~⑫ <좌동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**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.**	이 투자신탁은 **해외 주식인 홍콩(HONG KONG, 香港)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**
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**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 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** <이하 생략>	**이 투자신탁은 "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** **이 투자신탁은 "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"HSCEI 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 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며,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** <좌동>
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	**<신설>**	**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"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 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** **※ 비교지수: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**

3) 운용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**김명준**	**송진용**

미래에셋자산운용㈜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송진용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3년~06년) 대신증권/대신투신운용 마케팅, 주식운용

(0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

2. 운용현황(2022.3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10	299,115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3-10-21	138,271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7-02-09	107,660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9-02-02	88,394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6-05-09	87,353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5-09-18	78,287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62,496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21	61,275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59,677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	2009-07-23	57,349

3. 운용성과(2022.3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54	-15.47	-17.96	99.95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4.97	-11.62	-16.37	86.06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6.06	-12.49	-18.13	356.54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98	-14.62	-8.87	150.46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0.93	2.82	8.27	154.89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5.38	-0.76	-1.08	216.20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14.07	28.53	15.86	8.55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2.88	-8.63	-11.98	85.63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67.31	-81.53	-82.69	-81.19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	-6.32	-12.16	-17.30	162.96